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
----------	-----

제출년월일 : 2016.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03.24. 공포, 2014.11.29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 직접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명시하는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나. 지원사업 확대(안 제4조)

- 지역 대표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 외식문화 체험
-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등 추가

다. 보조금 지원대상 명시(안 제3조)

- 지역 대표음식 및 향토음식 개발 참여업소 및 위생관련 법인·단체에 보조금지원 근거 명시함

라. 심의위원 구성 및 비율(안 제10조)

- 심의위원회 구성에 올림픽운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함
-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3. 11. ~ 2016. 3. 31.) 결과, “의견반영(안 제10조)”

제출의견	처리계획
2016년 3월 7일 평창군 행정조직 확대개편에 따른 올림픽운영과가 신설되었음.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위생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올림픽운영과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의견반영(안 제10조)”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의견반영(안 제10조)”

개선의견	처리계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의견반영(안 제10조)”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04.27/원안의결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 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4.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단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 중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를 “제5조의 지원신청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 위생업소”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올림픽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3조(지원대상) <u>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u></p> <p>1.·2. (생략)</p> <p>3. <u>그 밖에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위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u></p> <p>5. <u>"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u>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업소</u></p> <p>4. <u>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u></p>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신설>

<신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인·단체

제4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
- 제5조의 지원신청자-----

-----.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주택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구성하되, 위
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경제
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주
택과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
장, 올림픽운영과장으로 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환경위생과장 장 재 석
연락처	(033) 330 -2340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